

朝鮮後期 額內校生*

尹 熙 勉

I. 머리말

II. 名稱과 定額

III. 任 務

IV. 身 分

V. 入校方法

VI.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조선 후기의 鄉校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人的構成 가운데 향교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校任에 이어¹⁾ 향교의 생도인 校生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校生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功臣의 자손으로부터 평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校生입교를 허락하여 국가의 인재양성 목적에 부응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校生에게는 여러가지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 軍役의 면제가 가장 큰 특권이었다. 그러나 양반들의 軍役 면제가 일반화되어 가던 16세기 이후가 되면 校生은 대부분 평민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그것도 공부보다는 軍役회피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²⁾

조선 후기의 校生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들의 대부분은 校生의 軍役회피

* 本論文은 1986年度 全南大學校 學術研究費의 支援을 받아 作成되었다.

1)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校任」, 『李丙謙博士九旬記念史學論叢』, 1987.

2) 李成茂, 「朝鮮初期의 鄉校」, 『李相玉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69, 李範稷, 「朝鮮前期의 校生身分」, 『韓國史論』 3, 1976.

에 초점을 맞추어 교생은 군역도피자로 채워지게 되었고, 향교는 피역의 소굴로 변모되어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교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즉 「經國大典」에서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定額이 규정된 정원내의 교생, 곧 額內校生과, 군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향교에 冒入한 정액 외의 교생인 額外校生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파악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의 교생 가운데 우선 額內校生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額內校生의 명칭 및 定額의 준수여부, 이들의 향교에서의 임무, 그리고 이들의 신분적 위치, 入校方法 등에 대하여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II. 名稱과 定額

조선시대의 향교는 孔子와 先賢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大成殿, 東·西廡의 文廟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明倫堂, 寄宿處인 東齋 西齋의 學校가 기본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東齋·西齋는 위치가 각기 東과 西였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격에 있어서도 구별되었다. 柳馨遠의 「磻溪隨錄」에

지금 外方의 향교에 兩班은 東齋에 居齋하고 庶類는 西齋에 居齋한다. 때문에 西齋가 비었다고 해도 兩班들은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東齋가 비었다고 해도 庶類는 들어갈 수가 없다.⁴⁾

- 3) 宋贊植 「朝鮮後期 校生考」 《國民大論文集》 11, 1977, 金龍德 「朝鮮後期 學校研究」 《韓國史學》 5, 1983.

최근에 조선 후기의 교생에 대한 논문이 나온 바 있다(全炅穆, 「朝鮮後期 校生의 신분에 관한 재검토」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이 논문에서 校生이 儒生과 구별되며, 신분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인 中人이며, 일종의 役擔當者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다만 논증에 있어서 자료의 한정으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校生의 변화모습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磻溪隨錄》 卷 9, 敎選之別

고 한 것처럼 東齋·西齋의 구별은 그곳에 머무는 학생들의 신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신분구별은 그들을 부르는 명칭에서도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安鼎福의 「雜同散異」에

東齋儒生…… 향교의 靑衿錄儒生은 東齋에 居齋한다.

西齋校生은 寒畯庶孽 및 民의 俊秀者를 校生으로 택하는데 西齋에 居齋한다.⁵⁾

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東齋에 머물며 靑衿錄에 들어있는 양반들을 東齋儒生, 庶孽·平民으로 西齋에 머무는 사람들을 西齋校生이라 구별해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儒生과 校生の 명칭상의 구분은 관찬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肅宗 4년 4월의 號牌事目에

一. 靑衿錄, 校案을 考見해서 이름이 靑衿錄에 있으면 學生이라 쓰고 이름이 校案에 있으면 校生이라 쓴다.⁶⁾

고 한 것이 그것이었다.⁷⁾

조선 후기에 같은 향교의 학생이라도 신분에 따라 東齋儒生과 西齋校生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 아울러 이들은 각기 향교에 참여하는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다.

양반들의 향교회피는 각종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즉 校生이 되지 않아도 균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분적 특권과 함께, 下層身分들과 함께 섞여서 공부하는데서 오는 수치,⁸⁾ 官學인 향교에 대한 제약과 간섭⁹⁾ 등으로 인해 양반들은 향교에서 공부하기를 꺼려하였다. 아울러 향교교육의

5) 《雜同散異》 鄕校約令

6) 《備邊司謄錄》 34冊 肅宗 4年 4月 15日條(이하 備 34 肅宗 4, 4, 15로 표시)

7) 여기서 學生이란 '生則幼學 死則學生'의 의미가 아니고 四部學堂의 학생, 향교의 양반유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8) 仁實 14 仁祖 4, 11, 辛卯

9) 孝實 19 孝宗 8, 7, 己酉

비효율성, 敎官들의 무능 때문에 양반들은 향교대신 私設書齋나 書院 등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이 향교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외면하였다는 것이지 향교에 전혀 출입도, 간여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靑衿錄을 작성하고 儒生이라는 이름으로 入錄하였다. 이러한 것은 양반임을 과시하고 신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儒生 가운데에서 향교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校任을 선발하였다.¹⁰⁾

이와 비교해서 校生案에 入案되어 있는 西齋校生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향교의 守直과 祭享의 執事 등을 담당하는 일종의 役擔當者들이었다(2節 참조). 따라서 西齋校生이 향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에서 東齋儒生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東齋儒生과 西齋校生의 명칭상의 구분, 기능상의 차이는 언제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졌을까. 儒生과 校生의 구별을 결정적으로 가져온 것은 仁祖 4년부터 시행논의된 校生考講 때문이었다. 이때의 고강대상은 액내외교생을 망라한 광범위한 것이었고, 또한 평민들 뿐만 아니라 양반교생도 포함되었다. 당시의 논란은 낙강한 양반교생을 그대로 定軍하는가 아니면 罰布를 부과하는데 그치는가 하는 것이었지¹¹⁾ 양반교생을 고강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낙강하면 3년간 收布를 하는 것으로,¹²⁾ 그 뒤 인조 22년에는 武學降定으로 낙착되었다.¹³⁾ 이에 양반교생들은 교생을 회피하였다.

中古 이전 列邑의 校籍에는 모두 양반, 업유가 입록하여 삭망분향, 춘추향사를 하였는데 그 후 考講定軍之法이 설행되자 양반들은 모두 피하고 오히려 이런 (피역의) 무리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마침내 謬例를 이루었다.¹⁴⁾

10) 尹熙勉, 앞의 논문.

11) 崔永浩, 幼學·學生·校生考, 《歷史學報》101, 1984.

12) 仁實 14 仁祖 4, 12, 乙卯

13) 備 37 肅宗 9, 12, 12 校生考講師目

14) 承 591 英祖元, 4, 17

이제 양반들은 고강에서 제외되는 성균관, 四學처럼 청금록을 작성하고 東齋儒生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구별은 仁祖代부터 시작되어 대체로 숙종 전에는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보편화되었다.¹⁵⁾

향교의 교생의 수는 「經國大典」에 府·大都護府·牧은 각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⁶⁾ 이는 成宗 2년에 世祖代의 액수에서 2배 정도로 증액된 것으로¹⁷⁾ 「經國大典」에 그대로 법제화 되었고, 그 후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고정되었다. 校生の 定額策定은 군현의 규모에 따라 정해놓은 것이었다.¹⁸⁾

그런데 조선 후기의 관찬기록을 보면 교생의 수가 한 군현에 수백,¹⁹⁾ 수천명,²⁰⁾ 심지어 만명²¹⁾이 있는 곳도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관찬기록 특유의 과장이 섞여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각 군현에 정액을 무시할 정도로 많은 교생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곧 校生에게 부여된 구역면제의 특권을 이용하여 향교가 피역의 소굴이 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조선 후기에 각 군현에서는 정액을 무시하고 마구 교생을 入校시켰을까. 혹 校生 뿐만이 아니라 東齋儒生을 포함해서 校生の 수를 말한 것이 아닐까. 또는 定額外의 교생, 소위 額外校生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東齋儒生의 포함여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오늘날 전라도 각

15) 조선초기에도 校生들은 신분에 따라 東齋와 西齋에서 居齋하는 것에 구별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칭상의, 기능상의 東齋儒生과 西齋校生の 구분, 이에 따른 靑衿錄, 校生案의 별도 작성은 仁祖代 이후 늦어도 숙종전에부터라 생각한다. 東齋儒生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16) 《經國大典》卷 3 禮典 生徒條

17) 成實 10 成宗 2, 6, 丁未

18) 肅實 49 肅宗 36, 8, 辛巳

19) 備 46 肅宗 18, 2, 9

20) 顯改實 28 顯宗 15, 7, 乙丑

21) 備 63 肅宗 37, 10, 28

22) 이는 조선 후기 향교의 실상을 설명하는 논문들에서 흔히 지적되는 바다. 그러나 교생을 額內와 額外로 엄격히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表 1〉

全羅道 各鄕校 靑衿儒生の 數²³⁾

高敞鄕校①		求禮鄕校②		潭陽鄕校③		務安鄕校④	
年 代	數	年 代	數	年 代	數	年 代	數
1646년	52	1691년	41	1687년	54	1683년	223
1660년	46	1693년	31	1689년	73	1735년	270
1676년	46	1718년	57	1690년	97	1740년	351
1694년	73	1721년	48	1696년	124	1818년	365
1708년	80	1725년	43	1699년	133	1820년	427
1725년	91	1732년	45	1702년	118	1839년	541
1731년	82			1708년	125	1888년	366
1734년	74			1711년	137		
1766년	125			1714년	88		
1774년	126			1717년	196		
				1720년	167		
				1722년	196		
				1723년	186		
				1741년	161		
				1747년	238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靑衿錄에 수록되어 있는 儒生의 수를 몇개의 향교의 예만 조사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에서 보듯 儒生들은 정액이 없었던 것 같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유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유생들은 군현에서 양반이라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거와 試才를 거쳐 靑衿錄에 입록되었다.²⁴⁾ 양반들로서는 군역회피의 목적으로 향교에 적을 둘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양반들이 향교에서 공부하고, 향교운영에 간여한다는 자체는

23) ①은 崔允樞, 「高敞鄕校 東·西齋儒生案에 대한 檢討」 《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p. 256의 〈表 1〉에서 인용.

②는 全羅南道, 『全南의 鄕校』, 鄕土文化叢書 28輯, 1987, pp. 103~106을 정리한 것.

③은 위의 책, p. 374에서 인용

④는 위의 책, p. 448에서 인용

24) 《雜同散異》 鄕校約令 靑衿錄

국가로부터 권장과 환영을 받는 일이었다.²⁵⁾ 仁祖 24년 正月의 忠淸監司 狀啓에

淸州牧에 달아 謁聖할 때에…… 校案을 取考하니 東齋라 칭하며 書錄한 자는 수백명, 西齋에 書錄한 자는 역시 수십명²⁶⁾

이라 한 것이나, 「務安鄉校誌」에

東齋儒生은 定額이 없다.²⁷⁾

고 한 것이 儒生의 액수문제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東齋儒生이 아무리 많더라도 양반인 이들을 대상으로 양역회피, 군역회피 등의 문제를 거론할 성질은 아니었다.

다음 교생의 수가 定額이 무시되면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각 군현의 「邑誌」 邑事例를 조사해 보면 校生의 숫자는 「經國大典」에 군현의 등급에 맞추어 규정되어 있는 定額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邑誌」의 성격에 비추어 기계적인 숫자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 각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校生案 및 戶籍臺帳에 기재된 校生의 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表 2〉에서 보듯 네 縣의 경우 30명~40명 전후에서 校生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經國大典」의 정액규정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는 정액보다 오히려 적은 경우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 향교마다 定額規定에 거의 충실히 따르면서 校生을 入校시키고 校生案을 작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²⁹⁾

25) 《號牌事目》(奎 12344)

26) 《學校謄錄》卷 1 丙戌 正月 初 6日

27) 《務安鄉校誌》卷 1 儒生(1931年 刊行)

28) 《湖西邑誌》, 《湖南邑誌》, 《嶺南邑誌》의 各郡縣邑誌 邑事例 참조

29) 哲宗 2年の『江原道各邑校院生落講及雜頒區別成冊』(奎 17115)에 各邑의 校生의 숫자가 《經國大典》의 정액규정과 부합되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되겠다. 아울러 《全南의 鄉校》에 수록된 각 군현 校生案의 교생수도 정액에 거의 충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表 2〉

各鄕校校生の數³⁰⁾

懷仁鄕校①		高敞鄕校②		求禮鄕校③		丹城縣④	
年 代	數	年 代	數	年 代	數	年 代	數
1818년	29	1704년	45	1802년	34	1678년	47(47)
1824년	32	1714년	36	1804년	35	1717년	28(30)
1833년	30	1721년	43	1811년	38	1720년	30(36)
1839년	31	1737년	30	1822년	30	1729년	41(통계 없음)
1843년	31	1742년	30	1843년	28	1732년	39(42)
1846년	33	1751년	18			1735년	27(최손)
1852년	31	1779년	30			1759년	7(통계 없음)
1854년	37	1784년	30			1762년	13(15)
1864년	30	1824년	45			1780년	18(최손)
1873년	32	1843년	41			1783년	44(29)
1876년	31	1855년	40			1786년	13(29)
1879년	41	1862년	40			1789년	19(26)
1885년	31	1864년	40				
1888년	35	1866년	41				
1891년	40	1867년	40				
1894년	34	1868년	38				
1899년	42	1869년	40				
		1870년	37				
		1871년	40				
		1872년	40				

이렇게 定額에 맞게 책정되어 校生案에 수록된 校生이 곧 額內校生이었다. 또한 東齋儒生과 구별되는 西齋校生(또는 西齋生)이 이들 額內校生을

30) ①은 懷仁鄕校에 소장된 校生案 17件을 정리한 것. ②는 崔允櫟, 앞의 논문, 表 3, 4 인용한 것, ③은 《全羅의 鄕校》, pp. 119~121 정리한 것, ④는 《丹城縣戶籍臺帳》上下(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에서 필자가 확인한 校生の 수. () 안의 숫자는 臺帳의 各式年 끝에 기록된 校生の 總계숫자인데 필자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戶籍臺帳에 기재되어 있는 校生이 과연 額內校生에 국한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額外校生이 불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액외교생이 戶籍臺帳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戶籍臺帳內의 校生 표시자는 액내교생이라 하겠다.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東齋生을 額內, 西齋生을 額外라 하거나, 양반이 額內校生, 中人・庶孽이 額外校生이라 해석³¹⁾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校生이 한 군현에 수천, 수백이라는 지적들은 불법적으로 향교에 入屬하여 군역을 회피해 보려는 定額 이외의 校生, 즉 額外校生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³²⁾

유교국가인 조선에 있어서 유학의 증진, 지방민의 교화, 교육을 위해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설립해 놓은 향교가 보다 개방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정액을 획정해 놓은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액의 설정이유는 재정때문이라고도 한다.³³⁾ 그러나 조선 후기의 향교는 초기와 달리 교육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성현에 대한 祭禮機構에 불과한 실정이었다.³⁴⁾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校生의 정액규정을 후기에도 계속 적용한 것은 재정 때문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 초기의 기록이지만 成宗 2년 6월 經筵席上에서

領事 申叔舟가 啓하기를 “世祖께서 (향교의) 정원을 만드신 것은 그 때 군적에 오른 군인들이 모두 幼學에 托名하여 軍伍를 피했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³⁵⁾

고 한 것이 校生定額을 마련한 이유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아울러 후기에도 정액을 그대로 적용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곧 향교를 이용한 합법적인 군역면제자의 증가를 막고, 아울러 향교의 보호, 유지를 위해 한정된 이들 額內校生들에게 여러가지 임무를 맡기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상 조선 후기의 校生의 명칭, 정액에 대하여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校生은 西齋에 머무는 生徒들로 東齋에 머무는 양반신분인 東齋儒生과 구분되어 西齋校生이라 불리었다. 이들 西齋校生들은 군현에 따라 책정된 定額에 맞게 각 향교에서 劃定되고 있는데 이를 또한 額內校

31) 李範履, 앞의 논문, pp. 340~341 및 宋贊植, 앞의 논문, p. 63.

32) 備 50 肅宗 25, 9, 12, 備 63 肅宗 37, 10, 28 등

33) 仁實 14 仁祖 4, 8, 己酉

34) 《迂書》第二 論學校

35) 成實 13 成宗 2, 11, 甲寅

生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額內校生(西齋校生)은 군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향교에 入屬한 額外校生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였다.³⁶⁾

Ⅲ. 任 務

校生들은 향교에서 어떠한 일에 종사하였을까. 조선 초기와는 달리 후기의 校生은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다. 『湖西邑誌』木川縣誌 學校條에

校生은 定額이 30 인데 良民이 맡는다. 校中의 任役을 담당하며 西齋에 머문다. 고 하였듯이 校生의 임무는 任役으로 불리어졌다.

校生의 任役으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향교의 守直이 있었다.

① 鄉校의 西齋生은 모두 良民의 자식들입니다.…… 春秋의 釋菜時에 東齋生이 諸執事를 맡을 수 있고 聖廟의 守直 역시 東齋生의 직분인데 하필 良民을 校籍에 올려 군역을 회피하는 淵藪가 되게 합니다.³⁷⁾

② 沃川鄉校의 東西齋가 비어있고 朔望이 아니면 齋生의 入來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東·西齋生 각 1 명이 輪回入直하도록 하십시오.³⁸⁾

이러한 校生들의 鄉校守直은 輪回入直, 輪直³⁹⁾이라는 표현대로 番을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① 番儒는 한사람으로 校生이 3일씩 守番한다.⁴⁰⁾

② 西齋番儒는 前例대로 2人씩 달마다 入番하여 習禮한 것.⁴¹⁾

36) 따라서 조선후기의 校生을 언급함에 있어서 額內校生, 額外校生, 東齋儒生은 엄격히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校生은 곧 額內校生을 의미하며 설명한 것이다.

37) 承 277 肅宗 6, 7, 17

38) 備 85 英祖 5, 6, 22

39) 備 181 正祖 17, 6, 11

40) 《嶺南邑誌》義城縣邑誌 邑事例

41) 安義鄉校 記文 60 東西齋節目序(釜山産業大, 釜山慶南鄉校記文, 1986, p. 186)

이라 되어 있는 것처럼 각 향교마다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 校生들을 輪番守直시키고 있었다. 이 때 향교에 따라서는 東齋儒生이 함께 守直하기도 하는데⁴²⁾ 대개는 校生이 향교의 保人이나⁴³⁾ 殿直, 齋直 또는 「노비」⁴⁴⁾들과 함께 守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守直時의 식량 등의 부담은 향교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고,⁴⁵⁾ 또는 守直校生이 自擔하는 곳도 있어⁴⁶⁾ 일정하지는 않다. 「雜同散異」에

宿直하는 儒生은 日供하고 校生은 自備한다.⁴⁷⁾

고 한 것처럼 儒生에게는 향교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校生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다고 생각한다.

校生이 輪番守直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되었는데,⁴⁸⁾ 처벌의 내용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한다.⁴⁹⁾ 그리고 守直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무태만의 벌을 받았다.⁵⁰⁾

校生の 또 다른 임무로 들 수 있는 것으로 각종 祭享의 執事役割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군현과 향교에서 거행했던 祭享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향교에서의 祭享으로는 春秋의 釋奠祭,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焚香하는 朔望謁聖禮(焚香禮, 朔望通謁)가 있었다. 그 외에 향교를 修理, 重修할 때 位牌를 잠시 다른 곳에 옮기면서 올리는 告由祭(移安祭와 還安祭)가 있었다. 그리고 군현에서 거행하는 祭禮로는 수령이 매달 朔望에 왕을 상징하는 殿牌를 모셔둔 客舍에 나아가 禮를 올리는 望闕禮(客舍朔望之禮)

42) 《雜同散異》 鄉校約令 青衿錄

43) 《嶺南邑誌》義城縣邑誌 邑事例

44) 《嶺南邑誌》靈山縣邑誌 事例

45) 安義鄉校 記文 60 東西齋節目序

46) 梁山鄉校 記文 96 梁山鄉校重建記

47) 《雜同散異》 鄉校約令 青衿錄

48) 安義鄉校 記文 60 東西齋節目序

49) 求禮鄉校 西齋案(1843년)《全南의 鄉校》 p. 12.

50) 《學校叢錄》 卷 2 辛丑(顯宗 2년) 3월 3일, 卷 8 乙丑(肅宗 11년) 正月 24일 등

와, 그 외에 社稷祭, 厲祭, 祈雨祭, 城隍祭, 瀧祭 등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의 경사시에 儒生들이 모여 서울을 향해 禮를 올리는 望賀禮도 있었다. 이러한 각종 祭禮에는 守令이나 校任들이 獻官으로 참석하는데, 이들 獻官을 보좌하고 제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중을 드는 執事의 역할을 校生이 담당하였던 것이다.⁵¹⁾

祭禮의 執事 임무는 額內校生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선발되거나 쉼을 나누어 차례대로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는 祭禮에 맞추어 맡아야 할 執事を 아예 처음부터 분담해 두기도 하였다.⁵²⁾ 그런데 향교에서는 額內校生 이외에 執事を 전담하는 校生을 정액 이외에 몇명을 더 두고 있었다. 이들 執事校生의 加設은 당시의 관례였던 듯 싶다.⁵³⁾ 이는 「牧民大方」에

校生 가운데에서 精敏하고 지식이 있는 자를 택하여 儀式과 呼唱을 講習하여 禮錢을 잃지 않도록 한다.⁵⁴⁾

고 한 것처럼 복잡하지만 엄숙해야 할 祭禮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儀禮知識을 잘 습득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校生들이 分擔하거나 輪番하는 것을 지양하고 執事を 專擔하는 執事校生의 가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高敞鄉校「執事案」의 節目에

무릇 校生이 聖廟에서 守護하는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執事의 임무는 중요하다. 額內 30명중 負望知禮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러나 후에 校生을 면해보려는 폐단 때문에 지금부터는 (執事들) 별도로 택해 執事案을 작성함을 영구한 규칙으로 한다.⁵⁵⁾

고 한 것이 執事校生의 별도의 가설을 말하는 것이었다.

51) 肅實 5 肅宗 2, 10, 甲戌, 和順鄉校『鄉校都摠牘錄』(《全南의 鄉校》p. 932), 《湖西邑誌》牙州誌 邑事例, 淸風鄉校所藏「鄉校西齋淸衿案」.

52) 《嶺南邑誌》淸河縣邑誌 邑事例

53) 《湖南邑誌》高山縣邑誌 事例, 《湖南邑誌》玉果縣邑誌 事例, 《嶺南邑誌》知禮縣邑誌 事例 등

54) 《朝鮮民政資料》牧民大方 敬祀事

55) 高敞鄉校所藏《執事案節目》(1787년)

이상 額內校生の 임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守直과 執事였다. 때문에

① 西齋校生은…… 校中の 器物, 輪日直宿, 釋菜時에 賤한 執事를 담당한다.⁵⁶⁾

② 西齋校生은 聖廟의 守直과 祭享의 執事를 위한 자들이다.⁵⁷⁾

라 한 것이다.

校生の 임무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增補文獻備考」兵考 四에

舊例에 外方의 수령이 公私로 인해 上京할 때에는 兵符를 校生을 시켜 兵營으로 보낸다.⁵⁸⁾

고 한 것처럼 수령의 군대지휘권을 표시하는 兵符를 병영에 전달하는 임무가 校生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校生을 兵符校生 또는 兵符齎去校生이라 불렀다.

또한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관례적으로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는데 이때 각 군현에서는 赦文을 監營 등에서 받아와 반포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赦文을 받아와 읽는 일을 校生이 담당하였다. 이들을 赦文校生이라 하는데, 赦文을 전달하는 校生을 赦文齎去校生, 赦文을 읽는 일을 하는 校生을 赦文讀赦校生이라 하여 임무를 각각 나누어 맡기기도 하였다.⁵⁹⁾ 이들 兵符校生, 赦文校生은 額內校生 가운데에서 차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執事校生の 경우처럼 별도로 몇명의 校生을 加定해 놓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던 듯 싶다.⁶⁰⁾

이외에 校生들은 勅書의 보관,⁶¹⁾ 香祝의 보관,⁶²⁾ 養老宴, 鄉飲禮의 시중⁶³⁾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戶籍臺帳을 淨書하는 일도 맡아서 하였다.⁶⁴⁾

56) 《雜同敍異》 鄉校約令

57) 校院矯弊節目 (《全南의 鄉校》, p. 444)

58) 《增補文獻備考》 卷 112 兵考四 附符信

59) 《湖南邑誌》 海南縣邑誌, 玉果縣邑誌 事例

60) 한 예로 懷仁鄉校에는 執事校生案, 赦文兵符校生案 10件이 校生案과 별도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다.

61) 《牧民心書》 禮典 賓客

62) 和順鄉校「鄉校都摠謄錄」(《全南의 鄉校》, p. 934)

1856年(哲宗 7年) 전라도 興德縣監이 校生들에게는 맡겨진 役 이외에 어떠한 雜役도 부과하지 말라는 完文을 발급하고 있는데, 그 完文 속에 당시 校生들이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校生이) 하는 일을 말하자면 聖廟守護, 釋奠行祭, 朔望通謁, 各壇에의 公祭 및 客舍朔望之禮, 使客의 迎送, 나라의 경사 때 赦文을 읽는 절차 등으로 (이는) 校生이 아니면 行禮할 수 없다. 한 邑의 禮는 西齋만이 할 수 있으니 그 임무는 지극히 막중한 것이고, 책임은 매우 큰 것이다.⁶⁵⁾

조선 후기의 校生의 임무는 이처럼 다양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소양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校生들에게 製講, 勸課 등이 행해지기도 했다.⁶⁶⁾ 그러나 이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校生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校生에게 맡겨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케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항례적으로 행해지는 考講에 대비하는 정도의 교육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조선 후기의 額內校生은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校院矯弊節目」에

西齋校生은 聖廟를 守直하고 祭享의 執事를 위한 자들이다.…… 60세를 年限으로 하고 60세가 안되면 老除를 不許하는 것이 法例이다.⁶⁷⁾

라고 한 것처럼 校生은 郡役을 면제받는 대신 60세까지 향교에서 각종 임무를 담당해야하는 役擔當者였다. 郡役, 邑役도 면제받고 일정한 소양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校生들은 郡縣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校生에게 맡겨진 임무는 힘든 것이었다. 때문에 校生들은 도망을 하거나 移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⁶⁸⁾ 또한 郡縣에 따라

63) 《牧民心書》愛民 養老

64) 《嶺南邑誌》昌寧縣邑誌 邑事例, 《湖南邑誌》泰仁縣邑誌 邑事例 등

65) 興德縣校所藏「西齋完文」

66) 《湖西邑誌》稷山縣誌 壇廟, 《嶺南邑誌》京山誌 邑事例

67) 註 57)과 같음.

서는 교생의 정액을 채우지 못하는 군현도 있었으며,⁶⁹⁾ 실제 校生案을 보면 定額보다 크게 부족한 경우도 볼 수 있다.⁷⁰⁾ 교생이 避役의 淵藪이며 良丁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관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額內校生이 定額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이는 액내교생이 額外校生과는 달리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향교에서 책임과 처벌이 따르는 각종 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교생에게는 책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특권도 부여되고 있었다.⁷¹⁾ 그러나 당장의 고역을 모면하기 위하여 60 세 이전에 校生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여의치 않으면 移居, 도망도 하였던 것이다.

Ⅳ. 身 分

西齋의 額內校生은 명칭으로나 임무에 있어서나 양반신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종래 戶籍臺帳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의 신분구성, 신분변동을 논의하면서 교생의 신분을 兩班, 準兩班으로 보거나 또는 평민의 상층부, 中間階層으로 보는 등 의견이 일정하지 않다. 校生을 양반, 준양반으로 보는 이유속에는 교생이 군역을 부담하지 않으며 장차 생원, 진사가 될 관료예비군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⁷²⁾ 그리고 교생을 평민의 상층부, 중간계층으로 보는 견해는 양반들이 향교를 외면함에 따라 대신 평민, 서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일반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군역을 부담

68)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上下」의 肅宗 4年 戶籍末尾에 12명의 移居校生이 기재되어 있다(上, pp. 144~147 참조). 아울러 오늘날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校生案, 西齋案의 校生名單아래 逃, 移居등의 표시가 있는 것도 이를 가리킨다.

69) 《湖南邑誌》順天府邑誌 學校, 扶安縣邑誌 學校 儒額

70) 이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全南의 鄉校》에 수록된 校生案을 참조할 것.

71) 3節 參照.

72) 四方博, 「李朝人口에 관한 身分階級別의 考察」, 《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1976, pp. 171~172, 盧鎮英, 「十七世紀初 山陰縣의 社會身分構造와 그 變動」, 《歷史敎育》25, 1979, p. 88.

하지 **얕음**으로 보아 평민보다는 신분이 우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⁷³⁾

이렇게 교생의 신분에 대한 제전해 속에 공통되는 것은 校生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평민과 구별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생들이 향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러가지 임무를 고려해 볼 때 군역담당 유무를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신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 지역적 차이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군현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으며, 校生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職役을 지니게 되는지 등의 문제도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⁷⁴⁾

校生の 신분을 지적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校生이 되는 자들을 雜類,⁷⁵⁾ 閑遊之輩, 軍士子枝,⁷⁶⁾ 良民之子,⁷⁷⁾ 鄉曲卑賤子枝⁷⁸⁾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볼 때 校生の 신분은 평민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校生을 兩班庶孽,⁷⁹⁾ 平民庶孽之屬,⁸⁰⁾ 稍勝平民 未及士族,⁸¹⁾ 庶族,⁸²⁾ 閑散庶孽⁸³⁾ 이라고 지적하는 기록도 있다. 이로 볼 때에는 교생은 평민보다 신분이 높은 中人 정도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결국 조선 후기의 제 기록을 종합해 보면 校生の 신분은 우선 평민 또는 중인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73) 李範稷, 앞의 논문, 李俊九, 「朝鮮後期兩班身分移動에 관한 연구(上)」, 《歷史學報》, 96, 1982, p. 171.

74) 校生の 경제적 기반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戶籍臺帳에서 校生들의 노비소유실태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지만 外居奴婢의 존재를 고려에 넣을 때 이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校生の 경제적 기반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겨놓는다.

75) 仁實 14 仁祖 14, 11, 辛卯

76) 備 18 孝宗 7.7.21

77) 承 277 肅宗 6.7.17

78) 正實 8 正祖 3.11, 丁未

79) 《學校謄錄》卷 1 辛巳(仁祖 19년) 7월 3일

80) 孝實 7 孝宗 2.7, 癸卯

81) 仁實 14 仁祖 4.11, 庚寅, 《潛谷遺稿》卷 5 啓辭論校生考講

82) 《陋溪隨錄》卷 9 敎選之別

83) 《維同散異》鄉校約令

그런데 교생의 신분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언급이 있다.

- ① 憲府에서 啓하기를 “영남은 額內校生이 모두 士族이고 額外는 조금 미천한데 호남에서는 액외교생은 士族이고 액내는 조금 미천합니다. 나머지 6도는 모두 호남의 액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⁸⁴⁾
- ② 우의정 李尙眞이 啓하였다. “영남, 호남은 양반들이 액내교생,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됩니다. 호서는 中人・庶人・庶孽들이 교생이 되고 양반은 靑衿錄이라 칭합니다. 京圻, 京中은 중인, 서얼을 교생으로 삼고 양반은 儒林이라 칭합니다.”⁸⁵⁾

즉 기사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경상도, 전라도는 양반이, 충청도 및 기타 나머지 도는 非兩班이 額內校生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기의 교생의 신분을 일률적으로 평민 또는 중간계층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생의 신분, 지역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기록 이외에도 戶籍臺帳이나 校生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7세기의 校生의 신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1678년(숙종 4년)의 丹城戶籍과 1690년(숙종 16년)의 大丘戶籍에서 보이는 校生들을 모두 추출하여 그들의 戶主와 함께 명단을 정리하고 신분을 추정해 보았다.

〈表 3〉은 1678년의 丹城戶籍臺帳에서 校生을 찾아 面別로 명단을 정리하고 四祖, 인척들의 직역을 참고하여 신분을 추정해 본 것이다. 戶主인 校生 21명과 率子・孫・弟인 교생 26명 등 모두 47명이었다. 그 가운데 許通・庶子・妾子・孽子・孽孫・孽弟라 표시되어 서얼 또는 庶族임이 분명한 교생이 16명이었다. 그리고 四祖內에 평민직역이 있거나 妻, 母가 召史, 姓 등으로 표시되고 또 자식, 형제중에 保人, 步兵, 武學⁸⁶⁾ 등의 職役이 있는 경우는 品官職을 지니고 있어도 평민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84)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85) 承 284, 肅宗 7, 8, 23

86) 武學은 숙종대 이후에는 平民의 상층 내지 중간계층이 지니는 직역이라고 한다(李俊九, 「朝鮮後期の 武學攷」, 《大丘史學》 23, 1983 참조).

〈表 3〉

1678년(肅宗 4년) 丹城縣 校生名單과 身分

地 域	戶主(나이, 본관)	率子, 率弟 (나이, 본관)	身 分 推 定	推定理由(校生을 基準)
元堂面①	柳氏	子免講 李東陽 (28 陝川)	양반	父는 學生, 祖는 贈承訓郎刑 曹佐郎, 外祖는 宣務良
②	李召史	子 許通校生 李 思遂(14.?)	서얼	父는 學生 母는 妾
③	武學 鄭時△(河 東)	子 校生 鄭尙仁 (22. 河東)	평민	父는 武學, 祖는 定虜衛, 曾 祖는 正兵
④	忠義衛 李耆國 (星州)	良妾子 許通免講 李胤禮(31)	서얼	父는 忠義衛
⑤	許通免講 李胤邦 (33. 星州)		서얼	父는 忠義衛 李耆國, ④의 同 母兄
⑥	朴召史	子 校生 李芳國 (38. 星州)	평민	父는 학생, 祖는 成均生員, 母는 朴召史
⑦	校生 李葆國 (40. 星州)		평민	父는 學生, 祖는 成均生員, 妻는 鄭召史 ⑥의 異母兄
⑧	"	子 校生 李萬壽 (20)	평민	
⑨	"	子 校生 李萬善 (18)	평민	
⑩	許通校生 朴安進 (51. 密陽)		서얼	父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⑪	兵曹余丁 鄭之蒙	子 校生 鄭再昌 (16. 盈德)	평민 (남속)	父는 兵曹余丁, 母는 鄭召史 祖는 宣務郎禮賓寺主簿 兄은 步兵
⑫	校生免講鄭重弼 (34. 晉州)		양반	四祖父 學生, 母는 鄭氏, 妻 는 吳氏
⑬	許通業武 鄭△潤	子 校生 鄭百萬 (12. 晉州)	서족	父의 3祖는 學生, ⑦의 妻男
縣內面⑭	免講校生 △△ (47. 羅州)		양반 (남속)	父는 宣略將軍訓練院判官, 祖는 宣教郎興軍監判官
⑮	校生 韓希益 (37. 〇川)		양반 (남속)	父・祖는 學生, 曾祖는 通政 大夫
⑯	生員 權鉞	孽弟 許通校生 權鑾(22. 安東)	서얼	外祖는 正兵
⑰	許通校生 權鑾 (27. 安東)		서얼	外祖는 正兵, ⑯의 兄
⑱	忠義衛 尹亭璘 (故)	庶子校生 尹千壽 (24. 坡平)	서얼	
北面北洞⑲	忠義衛 李安國 (故)	孽孫 許通校生 李安一(6. 星州)	서얼	
⑳	忠義衛 李定國	孽子 校生免講	서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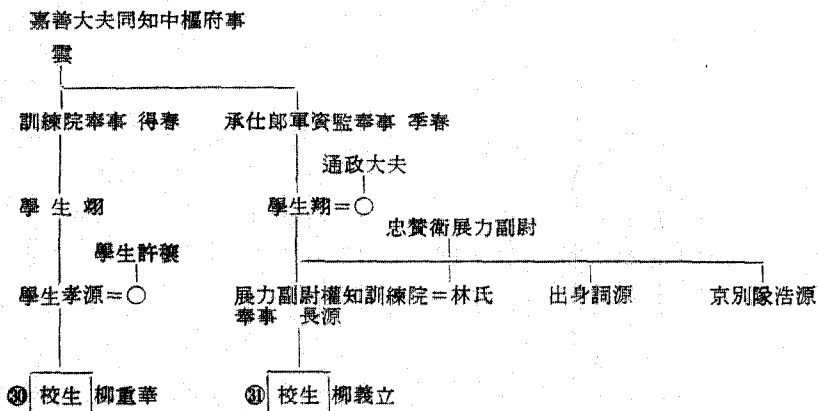
地 域	戶主(나이. 본관)	率子, 率弟 (나이. 본관)	身 分 推 定	推定理由(校生을 基準)
	(故) ②① 許通校生 河必遵 (57. 晉州)	李壽徵(21. 星州)	서열	父는 通仕郎
	②② "	子 校生 童蒙 河 萬天(15)	서족	
	②③ "	子 校生 童蒙 河 九天(12)	서족	
東面梧洞	校生 鄭之儒 (44. 草溪)		평민 (남속)	父는 業武, 祖는 効力副尉訓 練奉事, 妻는 召史
東面都山	免講 周以元 (52. 草溪)		평민 (남속)	父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祖는 通政大夫掌禮院判決事, 子는 京別隊保人
	②⑤ 免講 周宇達 (32. 草溪)		평민 (남속)	②⑤의 조카
	②⑦ 免講 金溥 (35. 安東)		평민	3祖는 學生, 外祖는 主簿, 弟 는 武學
北面新燈	幼學 權鼎男 (安東)	子 許通校生 權 夢虎(32)	서열	母는 妾 柳召史
	②⑨ 秉節校尉龍驤衛 副司果權克復	子 校生 權斗正 (19. 安東)	평민 (남속)	祖는 學生, 曾祖는 生員, 母 는 柳召史, 弟는 步兵
	③① 校生 柳重華		양반 (남속)	父, 祖, 外祖는 學生, 曾祖는 訓練院奉事
	③① 展力副尉權知訓 練院奉事 柳長源	子 校生 柳義立 (20. 晉州)	양반 (남속)	祖는 學生, 曾祖는 承仕郎軍 役監參奉
	③② 從仕郎 權克愼 (故)	子 校生 權斗中 (20. 安東)	평민 (남속)	母는 姜召史, 外祖는 展力副 尉訓練奉事
	③③ "	婿 校生 李宗萬 (27. 完山)	평민	
北面法多也	校生 尹機 (28. 坡平)		양반 (남속)	父는 學生, 祖는 啓功郎尙衣 院直長, 曾祖는 通政大夫
	③⑤ 校生 尹挺 (21. 坡平)		양반 (남속)	" , ③④의 同母弟
	③⑥ 校生 柳輝業 (53. 晉州)		양반 (남속)	父는 朝奉大夫通禮院相禮, 祖는 學生, 曾祖는 將仕郎箕 子殿參奉
	③⑦	子 校生 柳亭天 (16)	양반 (남속)	母는 許氏
	③⑧ 校生 柳榮業 (50. 晉州)		"	父는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祖 는 朝散大夫濟用監僉正, 外祖 는 啓功郎尙衣院直長(③④의 祖)

地 域	戶主(나이, 본관)	率子, 率弟 (나이, 본관)	身 分 推 定	推定理由(校生을 基準)
③⑨		子 校生 柳亨遠 (13)	양반 (남속)	母는 鄭氏
④⑩	校生 柳承業 (55. 晉州)		"	③와 同. ③의 兄
④⑪		子 校生 亨耆(25)	"	母는 金氏
④⑫	勳副尉 柳弘業	子 校生 柳亨老 (22. 晉州)	"	③와 同
④⑬	學生 尹震燮(故)	子校生 尹禧 (37. 坡平)	양반 (남속)	祖는 啓功郎尙衣院直長. 曾祖 는 通政大夫. 母는 韓氏. 兄은 生員 ④와 四寸
④⑭	校生 尹楷 (32. 坡平)		양반 (남속)	④의 弟
④⑮	校生 尹淦 (48. 茂松)		평민 (남속)	父는 老職通政. 祖는 嘉善大夫 子는 出身, 騎兵
④⑯	兼武 尹源 (35. 茂松)	子 校生 童蒙 尹 聖輔(10)	평민 (남속)	父祖는 老職通政. 祖는 嘉善 大夫. 母는 林姓 ④의 조카
④⑰	校生 尹溥 (39. 茂松)		평민 (남속)	④의 同母弟. 妻는 愼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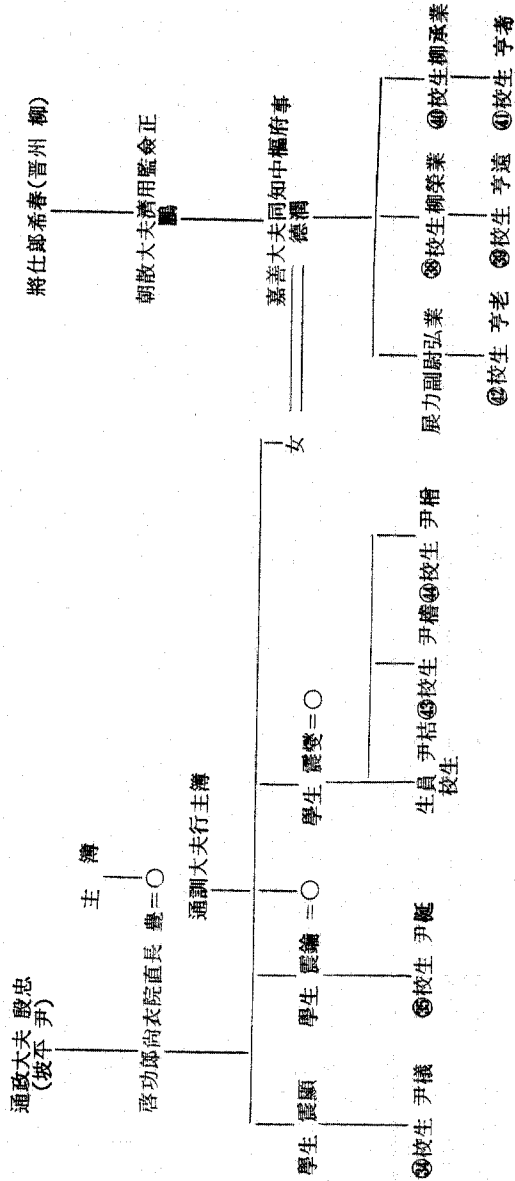
보고 평민신분으로 추정한 교생이 16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17명은 四祖의 직역으로 미루어 양반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17명의 양반추정자 가운데 직역명칭으로 보아 남속으로 인한 加

〈圖 1〉



〈圖 2〉



設職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⑭, ⑮, ③①, ③②, ③③~③④의 15명이 그것이다. 이들의 家系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圖 1〉에서 보듯 ③①, ③②은 8촌간으로 曾祖, 高祖의 職役은 명칭으로 미루어 納粟에 의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인척 가운데 出身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집안은 평민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흥양반이라 생각한다.

다음 ③④, ③⑤, ④③, ④④의 坡平 尹氏 4명은 〈圖 2〉에서 보듯 4寸間이고, ③⑥~④②의 晉州 柳氏 5명과 외척으로 연결되고 있다.

〈圖 2〉에서 보듯이 두 집안은 曾祖, 祖 모두 納粟으로 보이는 양반직역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문벌양반가문이라기 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신흥양반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坡平 尹氏의 경우 生員도 있어 평민의 신분에서는 거의 벗어난 인상을 주고 있다. 어쨌든 이 두 집안은 신흥양반으로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집단적으로 校生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③⑥, ③⑦ 두 校生父子는 이름의 항렬로 보아 〈圖 2〉의 晉州 柳氏와 같은 집안으로 생각되며, 끝으로 ④④, ④⑤의 두 교생은 祖先이 納粟으로 믿어지는 직역을 지니고 있어 아울러 납속양반이라 생각된다.

이상 1678년의 丹城戶籍에 보이는 교생들의 신분을 추정한 것을 다시 신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表 4〉를 작성할 수 있다.

〈表 4〉 1678년 丹城縣 校生身分 分布

身 分	番 號	數	%
서얼·서족	2, 4, 5, 10, 13, 16, 17, 18, 19, 20, 21, 22, 23, 28	14	29.8%
평 민	3, 6, 7, 8, 9, 27, 33, 38	8	} 34%
(남 속)	11, 24, 25, 26, 29, 45, 46, 47	8	
양 반	1, 12	2	} 36.2%
(남 속)	14, 15, 30, 31,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5	
		47	100%

즉 校生의 신분을 兩班／非兩班으로 나누면 17/30(36.2%/63.8%)로 非

兩班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양반교생이라도 문벌양반이 아닌 거의 전부 남속양반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양반사족들이 교생을 수치로 알고 꺼려했다는 일반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평민출신 교생이라도 절반이 四祖內에 남속한 것으로 보이는 양반직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 1690년(숙종 16년)의 大丘戶籍에 기재되어 있는 校生의 신분을 알아보도록 하자. 본고에서 조사한 지역은 四方博이 조사대상으로 한 지역과 동일한 10個面으로 戶主 16명, 率子·率孫·率弟 18명 모두 34명의 교생을 찾아낼 수 있었다.⁸⁷⁾ 이들의 신분을 앞서 丹城戶籍의 경우처럼 四祖의 직역, 妻나 母의 호칭, 동생이나 친척 등의 직역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表 5>를 작성할 수 있었다.

<表 5> 1690년 大丘府 校生身分 分布

身 分	數	%
庶 孽, 庶 族	12	35.3%
平 民	6	} 44.1%
(納 粟)	9	
兩 班	3	} 20.6%
(納 粟)	4	
	34	100%

<表 5>에서 보듯 兩班/非兩班의 비율은 7 : 27(20.6% : 79.4%)였다. 그 가운데 양반이라 해도 남속양반일 가능성이 큰 것이 4명이었다. 그리고 15명의 평민출신 교생을 보면 그들의 四祖內에 納粟으로 보이는 직역을 가진 경우가 9명이나 되고 있었다.

이상 17세기말의 경상도 丹城縣과 大丘府의 校生들의 신분을 戶籍臺帳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兩班 : 非兩班(평

87) 四方博, 앞의 논문에는 校生이 兩班 23명, 平民 1명 도합 24명이 계산되어 있다(職役別列舉綜合表).

민·서얼)의 비율이 각각 17:30(36.2%:63.8%), 7:27(20.6%:79.4%)로 非兩班身分의 校生이 훨씬 우세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양반신분으로 본 교생도 納粟兩班이 각각 15/17, 4/7이었다. 아울러 남속양반은 아니었다 해도 평민, 서얼들이 대부분인 교생에 참여할 정도라면 이들은 말단양반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리고 평민들의 경우 가계내에 納粟職役을 지니고 있던 교생이 각각 8/16, 9/15가 되는데 이들은 경제력이 있는 上層平民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17세기말의 경상도의 戶籍臺帳을 통하여 확인해 본 교생들의 신분은 경제력있는 평민의 상층부, 서얼 등의 中間階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겠고, 여기에 남속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신흥양반 그리고 소수의 말단양반이 入校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이는 士族들이 교생을 적극 회피하였다는 것, 또한 교생들은 稍勝平民, 兩班庶孽이라는 일반기록과 대개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경상도에서는 他道와 달리 士族이 額內校生이 된다는 일반기록의 지적들은 근거가 회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8세기의 校生들의 신분은 어떠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丹城戶籍臺帳에서 1729년(영조 5년)과 1783년(정조 7년)의 戶籍을 조사해 보았다. 앞서의 요령대로 校生들 각각 41명, 44명의 명단을 추출하여 신분을 추정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表 6,7>을 작성할 수 있었다.

<表 6,7>에서 보듯 17세기와 달리 納粟이나 양반신분의 교생은 없어지고, 서얼의 비율은 줄어드는 대신(29.8%→7.3%, 20.5%) 평민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34%→87.8%, 79.5%). 그리고 남속을 한 경제력있는 평민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50%→86.1%, 71.4%).⁸⁸⁾

결론적으로 17, 18세기의 교생신분을 戶籍臺帳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

88) 英祖 5년의 校生身分에서 戶長의 孫子 2명이 있는데, 이들의 신분을 중간계층 또는 平民의 上層으로 본다면 평민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고 하겠다.

〈表 6〉 1729년(英祖 5년) 丹城縣 校生身分 分布

身 分	數	%
庶 孽, 庶 族	3	7.3%
戶 長 의 孫	2	4.9%
平 民	5	87.8%
(納 粟)	31	
	41명	100%

〈表 7〉 1783년(正祖 7년) 丹城縣 校生身分 分布

身 分	數	%
庶 孽, 庶 族	9	20.5%
平 民	10	79.5%
(納 粟)	25	
	44명	100%

과 17세기에는 平民, 庶孽이 우세한 가운데 納粟兩班, 末端兩班이 校生으로 입교하고 있으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남속양반도 없고 모두 평민, 서얼이 입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얼도 감소하는 대신 평민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평민들도 대부분이 경제력있는 上層平民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조선후기 교생의 신분적 위치는 平民의 상층부, 서얼 등 중간계층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경상도의 額內校生은 士族이었다는 기록은 17세기와 마찬가지로 18세기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⁸⁹⁾

교생은 중간계층으로서 군현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 또한 교생에서 벗어나는 경우 직역상의 변화, 신분상의 변화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이 설명되어야 조선 후기 교생의 신분적 위치가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고

89) 《牧民心書》戶典 戶籍條에 茶山이 작성한 經緯表가 있는데 여기서 校生 高昌得을 良人의 游學者인 中으로 분류해 놓고 재산정도도 일반평민보다 우월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도 당시 校生들의 신분적 위치가 평민의 上層, 中間階層 정도였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된다.

교생은 원칙적으로 60 세에 老除될 때까지 향교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여야 했었다. 그리고 考講의 대상이 되어 낙강을 하는 경우는 교생에서 제외됨은 물론 균역을 부담해야 했었다.

반면에 校生들은 여러 혜택이 주어졌다. 우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균역의 부담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濫徵, 疊徵 등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물론⁹⁰⁾ 가족들도⁹¹⁾ 잡역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교생들의 혜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향교의 校生案, 西齋案 가운데 校生들의 이름아래 校生の 役에서 벗어나는 頃役理由가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 한 예로 求禮鄉校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表 8〉에서 보듯 校生들의 각가지 頃役事由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망, 이거, 질병, 상중, 노제 등 자연적인 탈역과 除役頃, 番頃이라 하여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校生에서 벗어나거나 輪番守直 임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鄉校元定, 客舍元定이라 하여 아마도 執事校生으로 옮겨간다고 생각되는 교생도 있다.⁹²⁾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校生

〈表 8〉 求禮鄉校 校生頃役 內容

年 代	校生數	校 生 頃 役 內 容
1802년(순조 2)	32	別監去 1, 農有司去 1, 軍官去 1, 移居 2, 除役頃 2 割案 2
1809년(순조 9)	35	農有司去 1, 風憲頃 1, 番頃 1, 病頃 2, 移去 5, 喪 人 6, 死 3, 客舍元定 3, 鄉校元定 1, 童蒙 1
1811년(순조 11)	38	農有司 1, 風憲 1, 番頃 2, 病頃 3, 移去 2, 喪人 4 故 6, 老退 1, 客舍元定 2, 鄉校元定 2, 割案 2
1843년(현종 9)	28	傳關頃去 1, 移去 1, 死 4, 客舍元定 1, 童蒙 1, 割 案 3

90) 興德鄉校所藏「西齋完文」

91) 求禮鄉校 西齋案(《全南의 鄉校》 p. 121).

92) 이 외에 割案은 校生案에서 이름이 削除된 것을 말하는데 교생이 罪를 범했거나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후손?) 손질을 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童蒙은 모호하지만 額外校生の 하나라 윤위되며 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생각된다.

〈表 9〉 1729년 丹城縣 校生の 職役變動

英祖 5년(나이)	英祖 8년(나이)	英祖 11년(나이)	
校生 ① 朴天錫(14)	武學	(세손)	*英祖 26년에는 業武
② 鄭重位(15)	校生(18)	(")	
③ 鄭重瞻(11)	校生(14)	(")	
④ 鄭重起(8)	禁衛保(11)	(")	
⑤ 鄭時貴(24)	校生(27)		
⑥ 鄭德平(8)	故		
⑦ 鄭萬年(19)			
⑧ 鄭萬壽(19)	幼學		
⑨ 李世璜(22)	校生(25)		
⑩ 徐守文(24)			
⑪ 李光春(20)	業儒	業儒	
⑫ 田時雨(19)	業儒		
⑬ 鄭得昌(18)			
⑭ 朴萬章(14)	校生(17)	校生(20)	
⑮ 尹就殷(33)	校生(36)	業儒(39)	
⑯ 林相興(14)	校生(17)	業儒	
⑰ 朴萬重	校生(11)		
⑱ 朴萬舉(15)	校生(18)	校生(21)	
⑲ 朴萬傑(12)	校生(16)	校生(19)	
⑳ 高日就(12)		禁衛軍	
㉑ 河德三(13)	校生(16)	校生(19)	
㉒ 河德章(15)	校生(18)	校生(21)	
㉓ 朴甫祥(11)	校生(14)	校生(20)	
㉔ 趙斗玆(27)	校生(30)	業儒	
㉕ 趙斗珮(24)	校生(27)	業儒	
㉖ 權必時(21)	職役없음	校生(31)	
㉗ 權必夏(17)	職役없음	幼學	
㉘ 權必道(13)	職役없음	校生(22)	
㉙ 權必復(28)	幼學	幼學	
㉚ 柳星世(19)	職役없음		
㉛ 徐尙舉(10)	校生(11)	校生(14)	
㉜ 徐震雄(7)	校生(10)	校生(13)	
㉝ 徐達章(7)	校生(10)	職役없음	
㉞ 徐震儀(42)	校生(45)	業儒	

英祖 5년(나이)	英祖 8년(나이)	英祖 11년(나이)	
③⑤ 徐連觀(10)	校生(13)	校生(16)	
③⑥ 崔震昌(12)	校生(15)	校生(18)	
③⑦ 崔震文(8)	校生(11)	校生(15)	
③⑧ 朴處文(11)	校生(14)	(훼손)	
③⑨ 朴俊世(32)	校生(35)	幼學	
④⑩ 李孟樅(8)	校生(11)	(훼손)	
④⑪ 李孟義(4)	校生(7)	(훼손)	

이 別監, 農有司, 傳關 등 鄉任으로, 風憲 등 面任으로, 軍官 등 軍任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頗役하는 경우이다. 이들 職任은 향촌사회에서 중간계층이 담당하는 것으로 군현의 통치체제내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⁹³⁾ 따라서 교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회가 닿으면 이러한 직임으로 전직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校生들의 직역변동은 어떠하였을까. 물론 교생은 60세까지 役을 담당하다가 老除頗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60세 이전에 여러가지 사유로 탈역하고 있었으며(4節 참조) 탈역한 뒤에 교생과는 다른 명칭의 여러 직역을 지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丹城戶籍臺帳에서 영조 5년의 교생 41명과 정조 7년의 교생 44명의 직역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호적대장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고, 필자의 부주의로 확인을 못한 교생도 있을 수 있어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직역변화를 아는데 그다지 대세의 영향은 없다고 보고 <表 9, 10>을 작성해 보았다.

93) 金龍德, 《鄉廳研究》, 韓國研究院, 1979, 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성격」, 서울대학교원석사학위논문, 1982.

94) <表 10>의 ②③④교생 3명은 60세 이상인데 校生을 지내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들 3명은 서로 6寸간이고 正祖 4年の 戶籍에는 모두 幼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 ③ 朴萬章은 영조 5년에 校生이었다(表 9의 ⑭번). 이들의 (再)入校理由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表 10〉 1783년 丹城縣校生の 職役變動

正祖 7년(나이)	正祖 10년(나이)	正祖 13년(나이)	
校生 ① 金海甲(27)	校生	(訓 令)	
② 李得龍(7)	職役없음	幼學	
③ 朱根白(34)	業儒	業儒	
④ 金清得(17)	(訓 令)	校生(23)	
⑤ 陳 秀(29)	幼學	幼學	
⑥ 姜太渭(46)	職役없음		
⑦ 廉雲彬(34)			
⑧ 許 頊(23)	校生(26)		
⑨ 鄭順才(21)	校生(24)	幼學	
⑩ 鄭仁才(30)			
⑪ 鄭尙億(15)		(去三嘉)	
⑫ 鄭龍饒(31)	職役없음	校生(36)	
⑬ 朴命卜(27)	校生(30)	校生(33)	
⑭ 鄭尙才(25)	職役없음	職役없음	
⑮ 金大文(30)	職役없음	職役없음	
⑯ 金大天(25)	職役없음	職役없음	
⑰ 鄭考之(17)			
⑱ 姜有渭(38)	校生(41)	校生(44)	
⑲ 鄭相渭(24)	職役없음	職役없음	
⑳ 梁厚三(40)	業儒	故	
㉑ 金景渭(17)			
㉒ 朴萬甲(78)	幼學	故	
㉓ 朴萬章(63)	幼學	業武	
㉔ 朴遷孫(15)	幼學	職役없음	
㉕ 朴萬彩(79)	幼學	故	
㉖ 朴思文(57)	幼學		
㉗ 朴處塾(18)	幼學	業武	
㉘ 朴應孫(17)	幼學		
㉙ 金光五(50)	良人	業武	
㉚ 姜種孫(23)	校生(26)		
㉛ 吳爲軍(24)	水軍		
㉜ 李興伊(15)	校生(18)		
㉝ 張尙得(12)	校生(15)	上馬保人	
㉞ 崔天益(19)	校生(33)	業儒	

正祖 7년(나이)	正祖 10년(나이)	正祖 13년(나이)	
③⑤ 鄭國寶(17)	業武	職役없음	
③⑥ 李保昱(18)			
③⑦ 李相畝(28)	校生(31)	校生(34)	
③⑧ 李德世(16)	職役없음	校生(22)	
③⑨ 鄭興祿(30)	業武	業武	
④① 金光一(31)	業武	閑良	
④① 李光世(23)	水軍	水軍	
④② 黃德光(25)			
④③ 黃潤清(28)	業武	業儒	
④④ 黃百斤(25)	院生	校生(31)	

〈表 9, 10〉에서 보듯 60 세 이전에 校生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통인데,⁹⁴⁾ 아직 교생을 계속 지내는 경우, 이름은 확인이 되나 戶籍臺帳에 職役의 기재가 없는 경우, 직역이 식년마다 바뀌는 예등도 있어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처음 지니는 직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1〉를 통하여 볼 때 故, 移居, 未詳은 별개로 놓고, 또 계속 교생을 지내는 경우 그 비율이 줄어들어(51.6%→24.4%) 교생들의 잦은 頃役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직역이 변할 것으로 보아 논의로 해도 좋겠다. 문제는 직역이 변동되는 교생인데 幼學이 되어 신분이 상승

〈表 11〉 丹城縣校生 職役變動

職 役 變 動	英祖 5년	正祖 7년
계 속 校 生	21(51.2%)	10(24.4%)
幼 學	4(9.8%)	8(18.2%)
業儒, 業武, 武學, 閑良	8(19.5%)	9(20.5%)
職役없음	1(2.4%)	7(15.9%)
軍 人, 保 人	2(4.9%)	3(6.8%)
故, 移 居	1(2.4%)	1(2.3%)
미 상	3(7.3%)	6(13.6%)
(계)	(41)	(44)

되었다고 생각되는⁹⁵⁾ 교생이 각각 9.8%, 18.2%이며, 業儒, 業武, 武學, 閑良 등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⁹⁶⁾ 중간계층으로⁹⁷⁾ 교생과 신분적 위치가 비슷한 직역으로 수평이동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각각 19.5%, 20.5%이다. 그리고 직역표시가 없는 것은 당장은 군역현성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에 넣을 때 이도 수평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校生에서 禁衛軍, 水軍, 保人 등 군역부담하는 직역으로 하강하는 校生이 각각 4.9%, 6.8%임이 주목된다. 이는 校生이 탈역을 해도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직역으로 옮겨간다는 앞서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혼란을 가져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表 9>의 ④鄭重位처럼 禁衛保에서 나중에 業武로 나타나는 경우로 보아 이는 신분의 하강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개재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어쨌든 직역이 변동되는 교생만을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表 12>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表 12>에서 보듯이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탈역한 교생의 직역변동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며, 아울러 중간계층인 교생이 탈역했다 해도 대부분 신분의(직역의) 수평이동에 그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결국 교생은 신분상승의 계기는 안되었을지 몰라도 군역과 잡역을 면제

<表 12> 丹城縣職役校生 職役變動

區 分	年 代	英祖 5년	正祖 7년
職 役 上 昇		4(26.7%)	8(29.6%)
職 役 水 平		9(60%)	16(59.3%)
職 役 下 降		2(13.3%)	3(11.1%)
계		15(100%)	27(100%)

95) 幼學이 모두 양반직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表 10의 ㉔, ㉕의 예를 보라). 여기서는 冒稱의 가능성이 큰 것이라 생각되지만 종래의 견해에 따라 신분상승이라 일단 해석해 둔다.

96) 忠翊忠壯業武業儒武學等 規外免軍者(仁實 19, 仁祖 6, 12, 辛卯)

97) 李俊九, 註 73의 논문 참조

받는 혜택이 주어졌고, 60 세 이전에 탈역해도 계속해서 군역에서 제외되는 직역을 지니면서 閑遊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 아울러 기회가 닿으면 鄉任, 面任, 軍任 등 향촌의 유력직임으로 전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생들은 중간계층으로서의 신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경제력이 있는 평민들로서는 교생이라는 직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入校方法

校生에 결액이 생기면 정액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교생을 보충하였다. 入校의 방법과 절차는 대체로 校任이 差出하고⁹⁸⁾ 東齋儒生들의 齊會(儒會)에서 교생입교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결정되었다,⁹⁹⁾ 이렇게 입교가 결정된 새로운 교생은 남아있는 교생들과 함께 일괄하여 명단이 작성된다. 이것이 校生案이었다. 이 校生案은 향교에서 校生들에 의해 작성된 후 매년 官衙에 보고하고¹⁰⁰⁾ 수령의 手決과 官印을 받아¹⁰¹⁾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교생안은 매년 초나 말에 禮房에 의해 監營에 보고되었다.¹⁰²⁾ 그러면 校生으로 입교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군현, 향교마다의 관행과 기준이 각기 달랐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교생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어떠한 공통점이 엿보이고 있다.

校生案을 보면 같은 姓氏에 같은 行列을 가진 교생이 여럿 눈에 띈다. 하지만 명단만을 열거하고 있는 교생안으로는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戶籍臺帳을 조사해 보면 교생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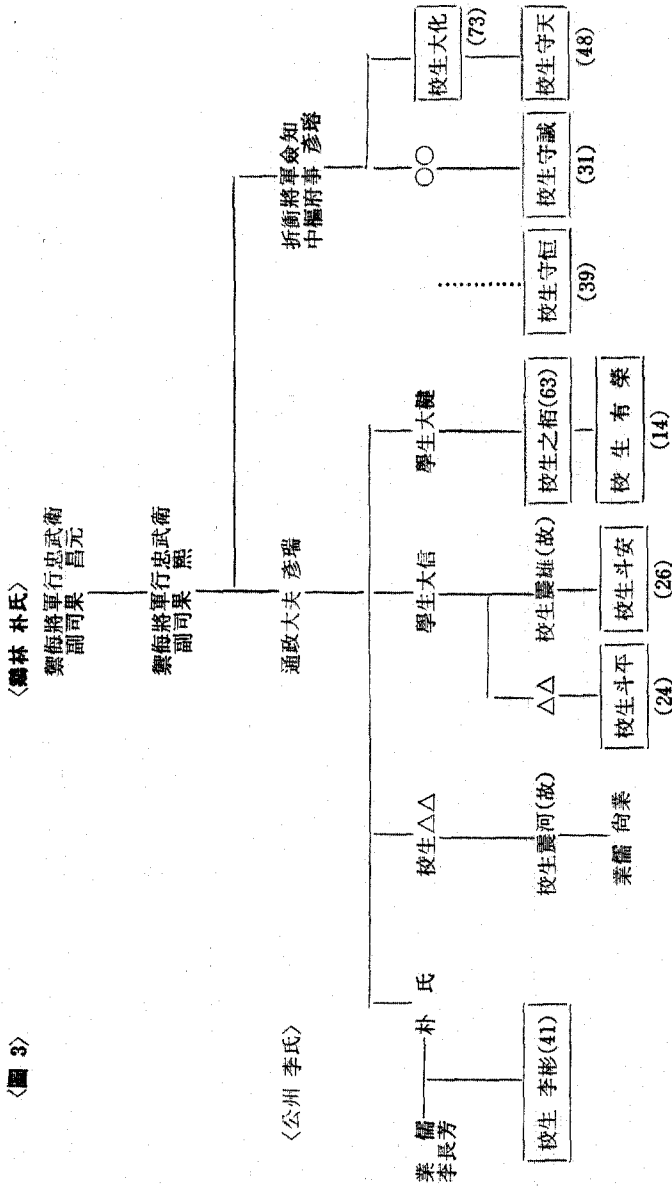
98) 時校任... 以民之姪容默 校生名色差出(1897년 所志), 전북대 박물관, 《김제지방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1985, p. 26.

99) 求禮鄉校 西齋案(1843년)

100) 《湖西邑誌》鴻山縣誌 邑事例 學宮

101) 校生案에 수령의 手決, 官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2) 《嶺南邑誌》彥陽縣, 義城縣邑誌 邑事例 公禮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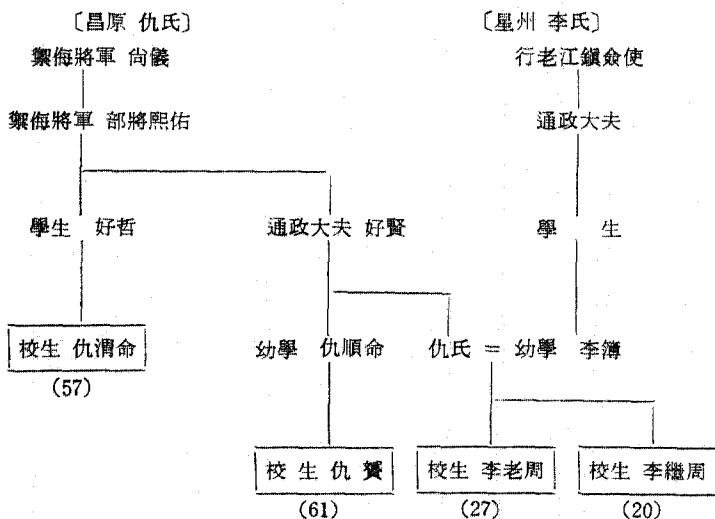
* □는 현재 校生 표시
 ()의 숫자는 나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17 세기의 강원도 金化縣의 校生들의 관제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1672 년(현종 13 년)의 金化戶籍에서 찾아낸 교생은 7 개 姓氏에 16 명이 다. 이들 가운데 교생을 많이 내고 있는 鷄林朴, 昌原仇, 星州李氏의 12 명의 가계를 조사해 혈연관계를 알아 보면 <圖 3>과 같다.

(圖 3)의 鷄林 朴氏 집안은 교생들의 祖先의 직역명칭으로 보아 남속한 양반가문으로 보인다.¹⁰³⁾ 교생 8명의 관계는 가장 나이 어린 교생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同高祖 8寸의 혈연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父子가 함께 교생인 경우가 둘(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넷)이고, 公州 李氏인 校生 李彬이 제림 박씨 교생들과 의척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눈에 띄인다.

〈圖 4〉의 昌原 仇氏, 星州 李氏의 집안도 직역명칭으로 미루어 納粟한



* ☐는 현재 표시
() 숫자는 나이

103)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umwha county in the late 17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1974, p.15 참조.

〈表 13〉 1729년(英祖 5년) 丹校縣校生の 血緣關係

地 域	校生名單(本貫)	關 係	地 域	校生名單(本貫)	關 係
元堂面	①朴天錫(慶州) ②鄭重位(草溪) ③鄭重瞻(晉州) ④鄭重起(草溪) ⑤鄭時貴(盈德) ⑥鄭德平(盈德) ⑦鄭萬年(晉州) ⑧鄭萬壽(晉州)	⑦, ⑧과 堂內 叔侄 四寸	生 比 良 面	②河德三(晉州) ②河德章(") ③朴甫祥(密陽) ④趙斗玠(咸安) ⑤趙斗明(")	四寸 형제
			新燈面	⑥權必時(安東) ⑦權必夏(") ⑧權必道(") ⑨權必復(") ⑩柳光世(晉州)	형제
縣內面	⑨李世璜(陝川) ⑩徐守文 ⑪李光春(義城) ⑫田時雨(高陽)		法 勿 也 面	⑪徐尙舉(利川) ⑫徐震雄(") ⑬徐達章(") ⑭徐震義(") ⑮徐達觀(")	同高祖 8寸 父子
梧洞面	⑬鄭得昌(草溪) ⑭朴萬章(密陽) ⑮尹就殷(坡平) ⑯林相興			⑯崔震昌(慶州) ⑰崔震文(") ⑱朴處文(竹山) ⑲朴俊世(") ⑳李孟延(陝川) ㉑李孟義(")	형제 叔侄 형제
都山面	⑰朴萬重(密陽) ⑱朴萬舉(") ⑲朴萬傑(") ㉑高日就(濟州)	6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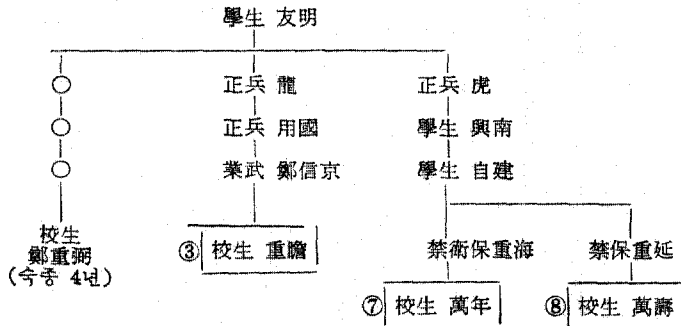
양반가문으로 보이는데, 이들 네명의 校生이 각각 從叔侄, 兄弟間的 혈연이고 아울러 두 집안은 외척으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17세기의 강원도 金化縣의 교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교생이 각 성씨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개의 집안에서 집단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점, 교생들이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인척이라는 점, 또한 父子이든 叔侄이든 세습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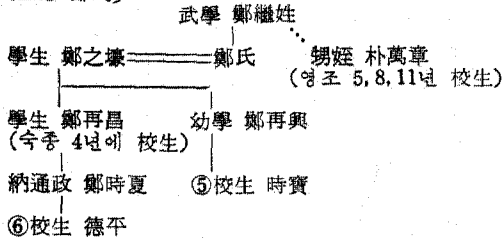
다음 18세기의 경상도 丹城縣의 교생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자. 英祖 5년의 戶籍臺帳에 보이는 41명의 명단을 작성해 보면 위와 같다.

〈表 13〉을 통해 교생들의 혈연관계를 알아보면 형제가 교생인 경우가 10명(24, 25, 26~29, 36, 37, 40, 41), 元堂面 晉州 柳氏 3명은 堂內이고(37, 38) 그 가운데 두 명은 4촌간이다.¹⁰⁴⁾ 盈德 鄭氏 두 명은 叔侄間(56),¹⁰⁵⁾ 都山面 密陽 朴氏 세 명은 6촌간이다(17, 18, 19).¹⁰⁶⁾ 生比良面 晉州 河氏는 4촌간(21, 22), 法勿也面 利川 徐氏 5명은 堂內(31~35)인데¹⁰⁷⁾ 그 중 둘은 父子, 둘은 4촌간이다. 끝으로 竹山 朴氏 두 명은 叔侄間이다(39, 40).¹⁰⁸⁾ 이상 살펴본대로 41명의 교생 가운데 27명이 적어도 同高祖 8寸

104) [晉州 鄭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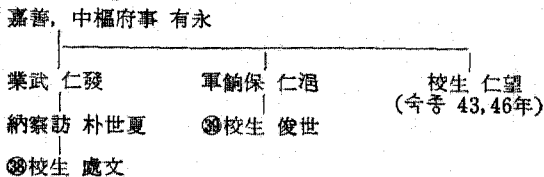
105) [盈德 鄭氏]



106) 註 1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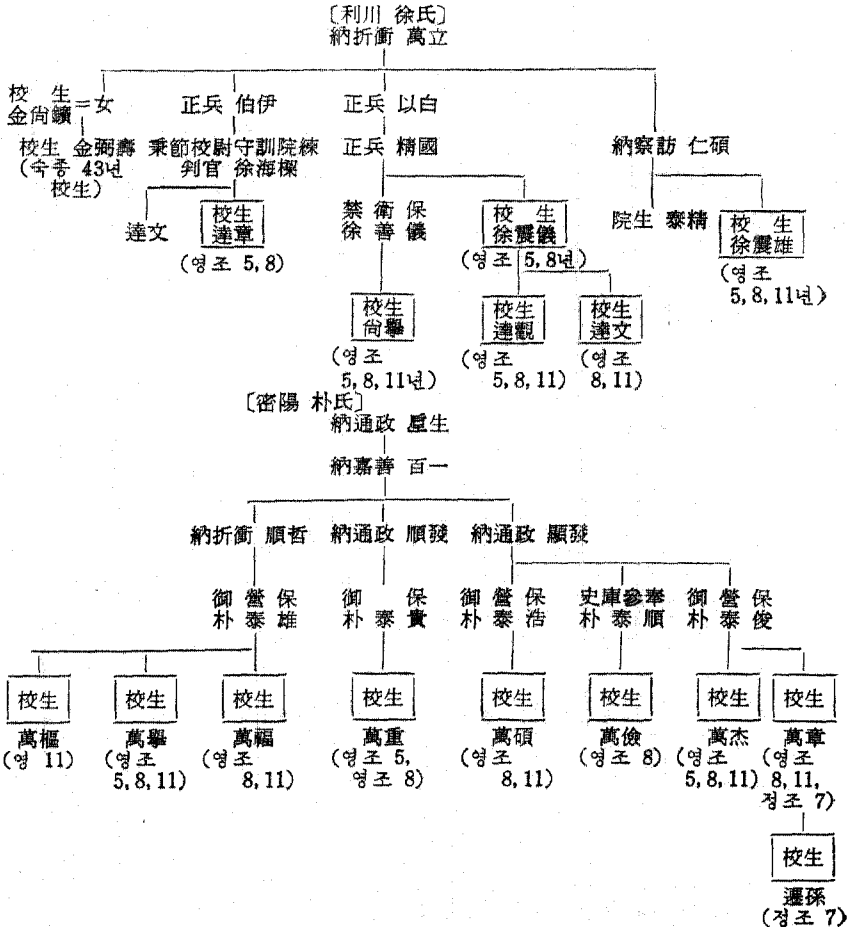
107) 註 109 참조

108) [竹山 朴氏]



丙의 혈연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의 교생이 군현 내에 있는 모든 良人 이상의 주민들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고 몇개의 집안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친족단위로 入校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⁰⁹⁾

109) 예를 들면 앞서 金化縣의 鷄林 朴氏가 8명의 교생을 차지하고 있듯이 丹城縣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영조 5년의 利川 徐氏 5명, 密陽 朴氏 3명은 영조 8년에 각각 6명, 7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교생의 입교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즉 교임들이 교생을 차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집안을 대상으로 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純祖 11年 3월 평안도의 陳弊冊子에

价川校生을 3代에 한하여 만약 교생(을 지낸자)의 아들이나 孫子가 아니라면 교생에 付校하는 것을 不許한다. (그리고) 父와 祖가 모두 교생이 아니면 軍伍로 汰定할 것을 청한다.¹¹⁰⁾

라고 한 것이 교생입교의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즉 교생입교의 세습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교임이 교생을 입교시키는데 있어서 이전이나 현재 교생을 지냈거나 지내고 있는 집안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친척을 교생으로 차출하였다는 점이다.¹¹¹⁾ 이러한 점에서 『湖西邑誌』 庇仁縣邑誌에

校任 俞趙安李申姜中 三人式

校生 林·金·次·姜·朴·崔中 五人式¹¹²⁾

이라 하여 교생이 되는 성씨를 지정해 놓은 것도 교생의 세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校生의 입교가 혈연관계로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도 일정한 범위와 절차가 있었던 것 같다. 「象山隨錄」 校宮節目에

挽近 이래 西齋에 교생이 아니면서 冒入하는 자들이 있어 適易이 잦다.

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

東齋任이 舊案에서 照檢考出하고 戶籍에서 서로 참고하여 元校生의 후예로 應

110) 備 201, 純祖 11, 3, 15

111) 앞서 본 金化縣의 경우 父子, 叔侄, 外戚間의 교생예가 그것이다. 아울러 英祖 5년의 41명, 교생 가계를 추적해 보면 16명이 이전에 교생을 지냈던 사람들과 內外戚으로 혈연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더 세밀하게 추적하면 혈연관계가 더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지면관계상 '논증생략').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교생입교의 세습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112) 《湖西邑誌》 庇仁縣邑誌 邑事例 人員

講人に 합당한 사람을 另擇하고 그 案(校生案)을 수정한다.¹¹³⁾

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교생의 차출에 있어서 우선 세습성을 고려하고, 다음은 대상자 가운데에서 교생의 임무를 수행할만한 소양을 갖춘자를 선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습성에 있어서도 혈연의 범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다. 1843년의 求禮鄉校「西齋案」에

만약 病老故의 順에 이르면 子姪兄族親 間에서 반드시 來脈이 분명한 자를 택하고 考講하여 새로 付校한다.¹¹⁴⁾

고 하여 탈역교생의 아들, 조카, 형, 친척의 근친순, 년소자순으로 교생으로 입교시킨다는 것이다.

교생의 입교에서 世襲性和 혈연의 근친성이 강조된 것은 양반들이 入案되는 鄉案이나 靑衿錄과 비슷한 것이라 하겠다. 양반사족들의 관심대상이 되는 鄉案, 靑衿錄에서도 세습적으로, 그리고 家系에 하자가 없어야 入案이 가능하였듯이 교생들도 그들 가계내에서 교생을 지냈던 일이 있었던가 하는 점이 고려된 후 교생입교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향안, 청금록에서 혈연을 고려한 것이 양반들의 신분적 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교생의 세습성, 근친성은 교생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케 하기 위한 목적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년소자를 우선으로 한 것은 교생의 잦은 교체를 막고 안정적으로 교생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校生の 입교에 세습성, 혈연성이 점차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 속에서 교생직역이 점차 賤視되고 침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¹¹⁵⁾ 또한 신분상승욕구를 지닌 사

113) 《象山隨錄》(奎古 5120-1259)

114) 《全南의 鄉校》, p. 121

115) 上同, p. 936, 昌原鄉校 記文 33 西齋祛弊記

람들이 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校生の 입교를 점차 회피하였기 때문이었다.¹¹⁶⁾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생의 세습원칙이 재강조되고 있으며,¹¹⁷⁾ 혈연의 범위를 넓혀 堂內나 외척까지 입교대상에 넣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¹¹⁸⁾ 아울러 세습교생이 아닌 새로운 교생들의 입교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즉 額外校生을 考講하여 우수한 자를 교생으로 충당하기도 하고,¹¹⁹⁾ 군현내에서 임무와 함께 여러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 교생에 관심을 가진 경제력있는 上層平民도 入校가 가능해지게 되었다.¹²⁰⁾

校生入校의 세습성과 함께 새로운 校生들의 入校를 丹城戶籍에 보이는 校生들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肅宗 4년부터 正祖 13년까지 12個의 式年戶籍에 보이는 校生들을 모두 추출하면 48個 本貫에 326명의 교생이 보인다. 숙종 10~30년과 영조 10~20년 사이의 戶籍이 없어 시간적인 연결이 곤란한 약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생의 입교에 어떠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48個 본관에서 최소 1명, 최대 40명의 교생을 내고 있어 편차는 상당히 큰데 평균 7명 이상의 교생을 내고 있는 본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表 14>를 작성할 수 있다

<表 14>

王別	本貫	密陽 朴	陝川 李	金海 金	草溪 鄭	晉州 鄭	晉州 河	晉州 柳	安東 權	坡平 尹	竹山 朴	金海 許	慶州 崔	晉州 姜	星州 李	利川 徐
肅宗	宗	5	8	11	4	4	4	15	7	6	4				8	
英祖	祖	23	9	4	6	10	6	5	6	6	6	5	6	2		15
正祖	祖	12	10	10	12	6	1					2	3	12		
(계) (253)		40	27	25	22	20	11	20	13	12	10	7	9	14	8	15

116) 4節에서 설명했듯이 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는 남숙양반이 교생으로 입교하지 않는 현상이 이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117) 註) 110, 113, 114의 조치내용이 교생의 세습원칙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118) 註) 109의 利川 徐氏의 외척인 金尙鑣이 숙종 43년에 교생이었던 것, 註 105의 校生朴萬章이 영덕 정씨와 외척이었던 점들이 세습의 적용과 함께 혈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능했던 현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119) 備 46, 肅宗 8, 2, 8, 肅實 30下 肅宗 37, 12, 庚辰

120) 4節에서 納粟한 명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가능성은 큰 것이라 생각한다.

〈表 14〉에서 보듯 15個 本貫에서 253명의 교생을 내어 전체교생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숙종, 영조, 정조대에 계속 교생을 내는 것은 密陽 朴氏의 5개 본관으로 이들은 전체 교생의 44.5%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 이 6개 본관은 丹城縣에서 교생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는 존재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숙종, 영조대에 계속 교생을 내는 晉州 柳氏의 3개 본관도 세습적으로 교생을 담당하는 본관 내지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4개 본관은 점차 교생의 세습에서 벗어나고 영조, 정조대에 교생을 내는 晉州 姜氏의 2개의 본관과 교체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외 숙종대, 영조대에만 교생을 내는 星州 李氏, 利川 徐氏는 세습교생 집안은 아니었는데 어느 기간 교생으로 입교했다가 곧 교생에서 벗어났던 경우라 추측된다. 같은 본관이라도 집안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대체로 교생을 내는 본관을 정리해 본다면 계속 세습적으로 교생을 담당하는 경우, 세습에서 벗어나는 경우, 세습에서 벗어나는 본관을 대신하여 새로 교생으로 입교하였다가 점차 벗어나는 경우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외에 나머지 33個의 본관의 73명 교생들은 어떠한 계기로 교생에 입교하였다가 곧 교생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교생입교의 세습성 원칙이 점차 허물어져 가는 추세에 따라 군현내의 경제력 있는 上層平民들의 入校機會가 넓어져가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향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습교생외의 새로운 교생을 확보하여 임무를 맡긴다는 목적 이외에 교생입교에 따른 재정충당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上層平民들로서는 교생입교를 이용한 군역회피, 頓役 후에 부여되는 신분상승 내지 閑遊하는 직역으로, 향임, 면임 등의 직임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을 둔 것이라 생각한다. 1818년(純祖 18년) 충청도 懷仁鄉校의 「校生案」 立議에

오른쪽 立議는 本齋의 執事生을 위한 것이다. (執事生은) 期望때 가장 근로하는 임역인데 본교가 凋殘함에 이르러 執事를 供饋할 것이 없어서 本齋의 慨然한

이 되었다. 때문에 齋舍와 本齋가 서로 의존하여 自募生을 搜得하였다. 方孟孫 한 사람이 10兩을 擲納하여서 매년 殖利를 취하였다.¹²¹⁾

고 한 것처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校生을 募入하여 입교시킨 것이다. 이때 입교한 方孟孫은 1818년의 校生案에만 이름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경제력있는 평민이 향교의 요구에 부응하여 納錢하고 額內校生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곧 앞서 校生의 신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열의 비중이 줄어들고 평민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평민 가운데 納粟한 上層平民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도 非世襲校生의 入校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¹²²⁾

결국 조선 후기의 액내교생은 교생을 세습하는 집안이 정해져 있고 이들이 대대로 교생으로 입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세습이 무시되면서 액외교생이나 평민들이 세습교생을 대신하여 액내교생으로 입교하는 추세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湖西邑誌》保寧縣邑誌 邑事例에

八面 元戶 三九三九戶內 校生 三十戶 永定校生 二十戶

121) 懷仁鄉校所藏 校生案(1818년)立讀

122) 戶籍臺帳, 校生案에 보이는 校生들을 명단을 비교하여 新入校生과 頃役校生の 비율 年齡의 分布를 비교하면 丹城縣의 경우 肅宗 46~正祖 13年の 7個式 年戶籍에서 매식년 평균 44%, 46%가 新入, 頃役하고 있으며, 年齡은 10代, 20代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19세기 懷仁鄉校 11個 校生案을 비교해도 丹城縣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논증생략). 이는 額內校生이 경제력있는 上層平民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額外校生의 入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額外校生이 不法의인 존재였던 반면에 額內校生은 合法的인 존재였던 것이다. 다만 60세 이전에 頃役하는 자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교생운용에 관한 것으로 향교의 사정, 개인의 사정, 除役年齡의 관행(참고로 懷仁鄉校는 40세가 除役이었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액외교생이 納錢, 納米, 納田畝을 하고 人屬하여 군역에서 제외되는 특혜만을 지니는 반면에, 액내교생은 군역 잡역의 면제, 頃役 후에도 군역에서 제외되는 職役, 職任으로 옮길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되었다. 額外校生에 대해서는 別稿로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기록은 조선후기의 교생의 세습성과 함께 非世襲校生の 교생입교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교생세습의 원칙이 교생의 천시, 교생입역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된다. 이는 校生の 세습을 어느 정도 고수함으로써 유교의 상징이자 양반들의 향촌기구가 되는 향교를 원할히 유지, 운영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한다.

Ⅵ. 맺음말

이상 조선 후기의 額內校生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校生은 西齋에 머무는 학생들로 仁祖代부터, 늦어도 숙종전에 東齋의 양반신분인 東齋儒生(靑衿儒生)과 구분되어 西齋校生이라 불리었다. 이들 西齋校生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획정된 定額에 맞게 책정되어 있음을 邑誌, 校生案, 戶籍臺帳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이들 西齋校生이 額內校生으로 군역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향교에 入屬한 額外校生과는 별개의 존재였다.

액내교생은 향교에서 守直, 祭享의 執事, 兵符의 전달, 赦文의 전달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 戶籍臺帳의 淨書, 勅書의 보관 등도 담당하였다. 이들은 군역을 면제받는 대신 60세까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役擔當者였다.

액내교생의 신분은 官撰記錄을 종합해 보면 평민 내지 중인정도의 신분으로 볼 수 있다. 戶籍臺帳을 분석해 본 결과 17세기말 경상도 丹城縣과 大丘府의 교생신분은 양반 : 평민 · 서얼의 비율은 각각 36.2% : 63.8%, 20.6% : 79.4%로 非兩班身分이 훨씬 우세하였으며, 양반이라도 納粟兩班, 末端兩班이었다. 18세기의 경우 丹城縣의 戶籍臺帳을 분석해 본 결과 남속양반마저도 없어지고 대신 평민들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평민 가운데

남속한 집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국 조선 후기 액내교생의 신분은 平民의 上層部, 庶孽 등으로 中間階層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校生들은 군역, 잡역의 면제, 頃役 후 鄉·面·軍任 등으로 轉職되고 있으며, 職役도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중간계층의 직역으로 수평이동되어 일생을 閑遊할 수 있는 잇점이 부여되었다.

액내교생의 入校는 校任의 差出, 儒會의 심사, 考講을 거친 후 결정되고 官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 校生은 前, 現校生의 친척 가운데에서 差出되는 世襲性이 원칙이었다. 그 가운데에도 近親順, 年少者順이었고 교생의 임무를 수행할만한 유교적 소양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 속에서 신분상승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校生 회피에 따라 혈연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나타나고, 이외에 군역의 면제, 직역상승을 목적으로 納錢入校하는 上層平民들이 校生으로 入校하는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